

등록번호	교통행정과-20110
등록일자	2016.4.20.
결재일자	2016.4.20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교통행정팀장	교통행정과장	안전건설교통국장
임병수	조희동	이준영	04/20 김종두
협 조			

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사용용도 일제조사 추진계획



서대문구
교통행정과

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추진계획

2016년 정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착오부과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부과자료를 확보하기 위해, 미사용 시설물 및 사용용도 등을 조사하고자 함

I 교통유발부담금 개요

■ 근거법령

-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, 제29조
- 「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」

■ 부과개요

- 부과시기 : 2016. 10월 정기분 부과(납부기간 : 10. 16. ~ 10. 31.)
- 부과대상 :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㎡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
- 대상기간 : 2015. 8. 1. ~ 2016. 7. 31.(1년간)
- 부과대상자 : 2016. 7. 31. 현재 시설물 소유자

■ 부담금 산정기준

- 부담금 산정기준

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× 단위부담금 × 교통유발계수

-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(단위 : 원)

부과기준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
3천㎡ 이하	700	700	700	700	700	700	700
3천㎡ 초과 ~3만㎡ 이하	700	800	900	1,000	1,100	1,200	1,400
3만㎡ 초과	800	1,000	1,200	1,400	1,600	1,800	2,000

※ 건물 총 연면적이 3,000㎡ 미만인 시설물은 350원 적용

○ 부담금 산정방식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

- 면적을 3천㎡이하, 3천㎡초과 ~ 3만㎡이하, 3만㎡초과 3등급으로 나누어 단위부담금 차등 적용

산정방식 예시	
면적 4만㎡ 시설물 (*16년 부담금 기준)	[(3천㎡x700원)+(2만7천㎡x900원)+(1만㎡x1,200원)] x교통유발계수

II 시설물 조사

■ 조사개요

- 조사대상 :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,000㎡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532개소
 - 부과대상 시설물의 공동 및 분할 소유자 중 소유지분 면적이 160㎡미만인 경우는 제외
- 조사기간 : 2016. 5. 1. ~ 6. 30.
- 조사방법 : 현장방문 전수조사
- 조사인력 : 시설물 조사원(기간제 근로자) 4명

■ 조사내용

-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및 건축물 멸실, 신·증축 여부 조사
- 시설물 소유권 및 건물 명칭 변동 등 부과자료 변경사항
- 부과대상 기간 중 미임대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여부 조사
- 실제 사용용도가 감면대상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

※ 일제조사 기간 중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신고 안내 병행 실시

Ⅲ 시설물 조사원 채용

■ 채용예정

- 채용인원 : 4명
- 근무기간 : 2014. 5. 1 ~ 6. 30 (2개월)
- 근무시간 : 09:00 ~ 18:00 (주 5일 근무)

Ⅳ 소요예산

■ 인건비(기간제근로자보수) : 12,022천원

- 산출근거 : 57,800원 × 4명 × 26일 × 2월

■ 예산과목

- 교통행정과 -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- 교통행정 관리 -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- 인건비 - 기간제근로자등보수

Ⅴ 행정사항

- 부과대상기간 중 멸실 또는 준공 처리된 건축물 자료협조 : 건축과
끝.